

1

대구경북 통합특별법(안) 주요내용

■ 제정 목적

- 기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, '한반도 신경제 중심축'으로 조성
-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원칙을 통합법률로 명문화하고 특별시의 위상과 권한·재정·특례내용, 균형발전 방안 등을 구체화

■ 특별법안 개요

- 제 명 :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

* 구자근·임미애 의원안을 통합·조정하여 명칭 변경 및 행안위 대안 발의(2.12)

- 구 성 : 5편 13장 391조 ※ 당초 구자근 의원안(7편 17장 335조)

편별
목차

① 총칙

②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

③ 벌칙

④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·운영

⑤ 보칙

<부칙>

■ 주요 특례

- (명칭) 특별시 → 통합특별시 ※ 새로운 유형의 광역지자체 신설
- (균형발전)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, 공공기관 우선 배정
- (농지·산지 전용허가) 특정 지구 지정 및 구역 내 권한 이양
- (환경영향평가) 범위 한정(통합특별시內) 및 특례 기한(3년) 지정
- (산업) 글로벌미래특구(9개 특구 의제), 이차전지,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
- (개발)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,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

■ 특별법안 세부 내용

제1편 총칙	
제2편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·운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1장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절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- 제2절 광역생활권의 지정 ▶ 제2장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의 이양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절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 -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▶ 제3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	
제3편 자치권의 강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1장 지방의회 ▶ 제2장 자치조직·인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절 자치조직 자율성 / 제2절 인사제도 자율성 / 제3절 일반행정 등 특례 ▶ 제3장 자치재정 ▶ 제4장 자치감사 	
제4편 교육자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1장 교육감 ▶ 제2장 교육재정 ▶ 제3장 교육행정 ▶ 제4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▶ 제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	
제5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1장 대구경북특별시 개발에 관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절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정 -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/ 제3절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▶ 제2장 첨단 과학기술 혁신 및 미래 신산업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절 첨단 과학기술(R&D) 기반 구축 / 제2절 미래 신산업 육성 제3절 산업단지 조성 및 기능 강화 / 제4절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 ▶ 제3장 문화·예술·관광 활성화 ▶ 제4장 최첨단·친환경 인프라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절 도시·공간개발 촉진 / 제2절 광역 교통망 및 물류 기반 구축 제3절 친환경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/ 제4절 지속가능한 물·산림·해양 자원개발 ▶ 제5장 지역 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	
제6편 보칙	
제7편 벌칙	
부칙	

2

통합특별법안 주요 특례

1 중앙 권한 이양, 자치권 강화

- ▶ 중앙행정기관 권한 단계적 이양 특례
 -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사무 이양 계획 수립
- ▶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에 관한 특례
 - 환경, 중소기업, 고용·노동에 관한 사무 이양 및 조치 특례
 - 이양 사무의 조직·예산 일괄 이양, 행정·재정적 지원 의무 등

2 재정 보장 및 자율성 확보

- ▶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한 신규 자원 확보
 - 부동산 양도소득세, 관할 구역 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 교부
 -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 상향(200 → 300) *현행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§75
- ▶ 재정 확보 및 보통교부세 불이익 배제
 - 가칭 광역통합(교육)교부금 20년간 지원, 대구경북특별시 통합계정 별도 설치
 - 보통교부세 종전 수준 이상 보장 * 24년 기준 (보통교부세) 총액의 19.5%, (보통교부금) 총액의 11.4%
- ▶ 지방세 및 투자심사·예타 면제 등 재정 자율성 특례
 - 11개 지방세목 탄력세율 권한, 지방채 한도 초과, 투자심사 대상 10년간 면제 등

3 특별시 개발

- ▶ 개발사업 관련 법령 인·허가 의제 / 토지특별회계 설치
- ▶ 개발부담금 및 조세 감면 / 글로벌 미래특구 중심 12개 특례 부여
 -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 지정 의제, 조세감면, 국공유재산 임대 등

4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

- ▶ 전담기구, R&D 포괄보조금, 특화단지, 국립연구기관 유치 등
 - 과학기술 법정계획 수립 권한 이관,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
- ▶ 신산업 연계 지역 과학기술 역량 지원, 바이오·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
- ▶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
- ▶ 신공항 연계 스마트모빌리티 산업, 수소특화단지 지정, 스마트농업 육성 특례 등

5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유치

- ▶ 국가산단 지정요청 및 개발계획 변경·관리, 기반시설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등
- ▶ 투자진흥지구 신설, 투자 보조금 및 가업상속공제 등

6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

- ▶ 특목고, 자율학교, 영재학교, 대학 설립 및 관리·운영·재정 등 권한 이양
- ▶ 지역 전략사업 연계 지역인재 선발,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 등

7 문화·예술·관광 활성화

- ▶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 지원, 지역문화 및 문화산업 진흥 거점 조성 등
- ▶ 공연·문화 및 체육시설·국제경기대회, 야간관광도시 및 관광육성지구 등

8 최첨단·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

- ▶ 개발제한구역 해제, 농지·산지전용허가 등
- ▶ 택지 및 역세권 개발,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

9 광역 교통망 구축

- ▶ 대도시권 광역 교통·철도 및 혼잡도로 개선, 대중교통 운영 지원
- ▶ 고속도로·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, 철도역사·고속국도 등 민간투자

10 환경·산림·해양자원 등

- ▶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,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등
- ▶ 환동해 수산자원 개발,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

11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

- ▶ 광역생활권 지정 및 운영,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
- ▶ 북부지역 예타 면제, 행정복합도시 조성, 울릉군 지원, 균형발전 교통망
- ▶ 저출생 극복 기금 신설, 청년지원정책, 여성근로자 탄력근무 및 인력관리 등